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안도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408호)
- 안도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491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5
1. 공중전화 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안도결의원안)	5

I. 개요

1. 안도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40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도결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10. 1.

(3) 회 부 일 : 2024. 10.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전화는 매출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통신복지를 제공하고 지진이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사용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지 중이며 이를 위하여 현행법은 공중전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공중전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최종 공급 이전의 매입단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중전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9호).

2. 안도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49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도결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10. 10.

(3) 회 부 일 : 2024. 10.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전화는 매출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통신복지를 제공하고 지진이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사용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지중이며 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중전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공중전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최종 공급 이전의 매입단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중전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결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공중전화요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안도결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u><신 설></u>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9호) ☒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 공중전화요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공중전화요금 ☐ 공중전화요금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제외 ☒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 부 칙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공중전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안도결의원안 2025. 10. 1. 발의(의안번호 13408), 안도결의원안 2025. 10. 10. 발의(의안번호 13491)

☐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¹⁾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된 공중전화를 삭제하고, 대신 공중전화요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있으나 부가가치세율을 ‘0’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면세와는 달리 전(前)단계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는다는 점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됨(이론상 ‘완전면세’).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 등에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²⁾에서 규정), 그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는 조세정책상 목적으로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 군납용 석유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과 그 건설용역, 장애인용 보장구,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영세율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부가가치세 면세 및 영세율 제도]

구분	영세율	면세
기본원리	일정한 과세거래에 0% 세율을 적용 ① 공급받는 자는 거래징수를 면함 ② 매입세액 전액 환급	일정한 과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면제 ① 거래징수 없음 ② 매입세액 환급되지 않음
성 격	완전면세	부분면세
취 지	소비지국 과세원칙 구현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적용범위	수출 등에 적용	기초생활품 등에 적용
사업자 협력의무	영세율 사업자도 납세의무자이므로 각종 협력의무 존재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각종 협력의무를 지지 않음.

자료: 「세법개론(2022)」, 임상엽·정정운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는 외국으로 수출되는 재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외국항행용역, 외화 획득을 위한 재화·용역이 있음.

□ 개정안은 공중전화 용역의 공급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영(零)의 세율로 적용하여,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통신복지를 제공하고 진이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사용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을 위해 유지되는 공중전화에 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공중전화는 사회취약계층, 노년층, 고령자, 통신사각지대 주민 등 휴대전화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필수적인 공공 인프라 시설로 영세율 적용을 통해 운영·관리 비용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제거하여 보편적인 통신복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현재 KT에 따르면, 공중전화 설치 대수는 2021년 3만 5,175대, 2022년 2만 8,819대, 2023년 2만 4,299대, 2024년 2만 1,481대, 2025년 9월말 현재 1만 3,028대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최근 5년간 KT 공중전화 설치 현황]

(단위: 대수)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말)
무인	보편 ¹⁾	26,439	21,570	18,634	17,058	9,081
	비보편 ²⁾	6,143	5,042	3,812	2,835	2,494
자급 ³⁾		2,593	2,207	1,853	1,588	1,453
합계		35,175	28,819	24,299	21,481	13,028

주1. 보편: 보편 역무로 설치된 공중전화(인구취약지역, 응급 상황 주변 지역 등)

주2. 비보편: 보편 역무로 설치되지 않은 일반 공중전화(대형 쇼핑몰, KTX역 등)

주3. 자급: 민간(시설관리자, 상가, 관공서 등) 자체 비용으로 설치·운영되는 공중전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전국 공중전화의 이용 건수는 월평균 120만 9,287건, 일평균 40만 3,096건이고, 공중전화 1대당 이용 건수는 월평균 92.8건으로 하루 평균 3명이 이용하는 셈임.

[공중전화 월평균 이용 건수]

(단위: 건수)

구분	서울	인천	대구	경기	제주	부산	울산	경북	강원
전체	262,123	88,608	108,154	245,367	17,434	101,953	22,340	105,629	20,832
구분	경남	세종	충남	충북	광주	대전	전남	전북	전국
전체	102,336	866	24,659	17,312	17,165	13,375	41,876	19,258	1,209,28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와 같이 휴대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공중전화 이용이 크게 감소하고는 있으나, 공중전화는 여전히 공공성 유지, 통신복지 실현, 재난 대응력 강화³⁾ 등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통해 공중전화에 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둘째, 공중전화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사업자인 KT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아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신복지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 체계는 매입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환급되지 않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단가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용자

3) 지진,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이동전화망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독립전원 방식을 사용하는 공중전화는 긴급 구조 및 신고 기능을 통해 공공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가 간접적으로 세부담을 지는 구조임.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영세율로 전환되면,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아 해당 예산을 디지털 바우처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과 보다 효율적인 통신복지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예산 재투자는 최종 이용자에게 전가되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중전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⁴⁾

둘째, 우리나라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일반원칙인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과 같이 소비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 방산물자, 도시철도건설용역,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영세율 적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매입세액 환급분은 통화요금 인하가 아닌 KT의 영업손실 보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KT는 공중전화 영업손실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T, LGU+ 등으로부터 보전받음에 따라 기업 지원의 필요성이

4) 국세청에 따르면, 공중전화는 면세 품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면세로 인한 조세지출 확인이 어려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47
